

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24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3. . .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-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면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고 처벌기준도 강화되고 있어 개인정보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며,
- 이장의 경우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나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특별히 조례에 명시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안 제3조의2(비밀유지)를 신설
 - 이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.(제1항)
 - 이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적 장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.(제2항)
 - 제1항에서 규정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는 개인정보를(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“개인정보”를 말함) 포함한다.(제3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별첨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

(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(2) 입법예고(2013.4.3 ~4.23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(3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구역안에서의 면장 업무중”을 “구역 안에서의 면장 업무중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제2조 제1항”을 “제2조제1항”으로, “하며, 이를 위해 지득한 비밀은 준수하여야 한다”를 “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타 지역”을 “타 지역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“10일이내”를 “10일 이내”로 한다.

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의2(비밀유지) ① 이장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.

② 이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적 장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.

③ 제1항에서 규정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는 개인정보(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“개인정보”를 말함)를 포함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소요되는”을 “필요한”으로, “범위안”을 “범위”로 하고,

같은 조 제2항 중 “범위안”을 “범위”로 한다.

제5조 중 “공부나”를 “공적 장부나”로 한다.

제6조제9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이장의 임무) ①이장은 리 구역안에서의 면장 업무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.</p> <p>②이장은 리를 대표하며,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.</p> <p>1. ~ 3. (생 략)</p> <p>4. 기타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과 봉사</p> <p>제3조(복무) ① (생 략)</p> <p>②이장은 제2조 제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, 이를 위해 지득한 비밀은 준수하여야 한다.</p> <p>③이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·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.</p> <p>④이장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이내에 사무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리 담당 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</p>	<p>제2조(이장의 임무) ① ----- 구역 안에서의 면장 업무 중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- 각 호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그 밖에</u> ----- -----</p> <p>제3조(복무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제2조제1항----- ----- ----- 한다.</p> <p>③ ----- 타 지역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④ ----- ----- 10일 이내----- ----- -----</p>

여야 한다.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면장, 인수자, 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.

<신 설>

제4조(실비변상) ①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, 월정수당은 읍면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②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5조(편의제공) 이장은 관할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, 읍

----- . -----

----- .

제3조의2(비밀유지) ① 이장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.

② 이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적 장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.

③ 제1항에서 규정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는 개인정보(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“개인정보”를 말함)를 포함한다.

제4조(실비변상) ① -----
----- 필요한 -----
--- 범위-----

----- .

② ----- 범위-----
----- .

제5조(편의제공) -----

면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.

제6조(임무수행 등 지원) 군수는 이장의 임무수행 능력배양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~ 8. (생략)
9. 기타 임무수행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경비

----- 공적 장부나 -----

-----.

제6조(임무수행 등 지원) -----

-----.

1. ~ 8. (현행과 같음)
9. 그 밖에 -----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비용발생 요인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

3. 미첨부 사유

- 조례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없음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자치행정과장 김진영
연락처	(033) 330 - 2210

관계법령

□ 지방자치법 시행령

제81조(이장의 임명) ①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읍·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이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·면장이 임명한다.

③ 읍장·면장이 제2항에 따라 이장을 임명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시장이나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□ 개인정보보호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개인정보”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,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(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)를 말한다.